

독신자도 ‘양자 입양’ 길 열린다… 민법 개정 추진



- 민법상 ‘반려동물’ 개념 신설…사망·상해 위자료 청구 가능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6일 서초구 법무부 의정관에서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TF 3차회의에서 논의한 친양자 입양제도 개선과 동물의 비물건화 후속 법안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법무부 1인가구TF, 동물의 비물건화 후속 법안 논의

결혼하지 않은 독신자 가정도 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민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민법에 ‘반려동물’ 개념을 신설해 불법행위로 생명을 잃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지난 9월 6일 서울고검에서 이 같은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 가구)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 결과를 공개했다.

1. '부부만 입양 가능' 규정 삭제 추진

현행 민법(908조의2)은 친양자 입양(친생 부모와의 관계를 종료시키고 양부모의 친족 관계를 인정하는 입양)의 요건을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결혼하지 않은 독신자는 양자를 키우려는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더라도 입양을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역시 2013년 해당 민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관 의견은 합헌이 4명, 위헌이 5명으로 위헌 의견이 더 많았지만, 위헌의결정족수 6명에 못 미쳐 합헌 결론이 났다.

사공일가 TF는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충분히 갖춘 경우에는 독신자도 단독으로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아동의 복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가정법원이 양부나 양모의 양육 능력과 양육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브리핑에서 '부부 공동으로만 입양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삭제해 독신자도 (입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라며 "구체적인 입양 허용 판단 근거는 가정법원이 재량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보고 있다."고 밝혔다.

독신자의 아동 입양에 대한 우려에 대해선 '혼자라도 기혼자 가정에 못지않게 양육을 잘 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입양을 허가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독일, 프랑스의 경우 입양하려는 사람이 일정한 나이 이상이면 독신자라도 입양을 허용하고 있다.

2. 반려동물 치료비·위자료 청구 조항 신설

사공일가 TF는 기존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개념과는 별도로 민법에 반려동물의 개념을 새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의 정의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 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다. 이 중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등 6종만 규정돼 있다.

정 심의관은 "동물보호법상 협소하게 규정된 반려동물의 개념을 민법에서는 '정서적 유대'가 가능한 동물에 초점을 맞춰 확대하려고 한다."이라고 밝혔다.

또 손해배상 시 교환가치 이상의 수리비를 인정하기 어려운 일반 물건과 달리, 반려동물의 경우 교환가치를 넘어선 치료비도 인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신의 반려동물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생명을 잃거나 다친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지난 9월 6일 서초구 법무부 의정관에서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TF 3차회의에서 논의한 친양자 입양제도 개선과 동물의 비물건화 후속 법안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수 있도록 하고, 민사집행법상 압류 금지 대상에 반려동물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는다.

법무부는 이 같은 의견에 따라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고 각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법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지난달 말 종료됨에 따라 이뤄진 후속 법안 논의 결과다.

법무부는 지난 7월 민법에 98조의2를 신설해 동물을 물건의 범주에서 제외하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초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출처/연합뉴스)